

사 업 명
국회의원선거관리 (1131-30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 선거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1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국회의원선거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국회의원선거관리	-	-	-	10,727	1,696	1,696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공적 관리(준비)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

·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

·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,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

② 추진경위 : 제1대~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19~2020년(4년 주기사업)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재보궐선거관리 (1131-30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3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재보궐선거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재보궐선거관리	2,370	100	100	4,395	100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연 1회 실시되는 재·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, 재·보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

② 추진경위

-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는 재·보궐선거의 법정선거사무 관리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
-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함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 안정적 선거관리에 지장 초래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19년(단년도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재외선거관리 (1131-305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5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재외선거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재외선거관리	10,431	1,064	1,064	10,118	4,671	3,607	339.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관리
- 재외 공명선거 기반조성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·단속
- 재외국민투표 관리기반 조성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공직선거법」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

② 추진경위

-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('09. 2. 12.)
- 제19대·제20대 국선 및 제18대·제19대 대선 재외선거 실시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위원회 및 외교부 재외공관

사 업 명
위탁선거관리 (1131-306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 선거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6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위탁선거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위탁선거관리	915	965	965	883	663	△302	△31.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위탁관리
- 공공 및 민간 위탁선거의 공정하고 깨끗한 관리
- 민간선거 및 주민(소환)투표의 공정관리로 사회 갈등문제의 합리적 해결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<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경선관리 >

- 공직선거법 제57조의4(당내경선사무의 위탁)

< 위탁선거관리 >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,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
- 주민투표법 제3조,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

② 추진경위

<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경선관리 >

- '04. 3월 정당법 개정으로 제31조의4(당내경선사무의 위탁) 신설
- '05. 8월 공직선거법 제57조의4(당내경선사무의 위탁)로 이관
- '06.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당내경선 위탁관리 실시

< 위탁선거관리 >

- '05년 농·축·수·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위탁관리
- '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'11년부터 재개발·재건축조합 등의 추진 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선출 위탁관리
- '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임원선거 지원
- '1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임원선거 위탁관리
- '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단체등 선거 위탁관리
- '15년부터 농(축협 포함)·수·산림조합선거 동시 실시
- '17. 7 국립대 총장 직선제 전환으로 인한 위탁관리(정부 100대 국정과제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선거보전금 (1131-307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조사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7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선거보전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보전금	124,131	215	215	-	-	△215	순감

나. 사업설명자료

- 1) 사업목적 : 선거공영제 시행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
- 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공직선거법」 제122조의2(선거비용의 보전 등)

-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국가가 부담
-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

② 추진경위

- 헌법 제116조에 따른 선거공영제
- 2000. 2. 16. 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」 개정으로 선거비용제도 도입
- 2005. 8. 4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에 대한 보전
- 2007. 1. 3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보전
- 2010. 1. 25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
- 2015. 8. 13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활동보조인(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포함)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위원회

사 업 명
선거장비및물품관리 (1131-309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9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선거장비및물품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장비및물품관리	-	-	-	-	2,485	2,485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- 1) 사업목적 :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의 효율적 보관·관리
- 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19조(경비의 부담), 「공직선거법」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
- ② 추진경위
 - 2014. 6. 4.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통합보관 및 유지보수 실시
 - 2016. 4. 13.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후 투표함·기표대 등 선거물품 통합보관 실시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위원회

사 업 명
정당사무지원 (1132-32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 선거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0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정당발전지원	정당사무지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정당사무지원	363	345	345	511	345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당·후원회 운영 지원, 정당정책 기능 강화 및 정책경쟁 유도
- 정당활동 공개 등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
- 정치·선거제도 연수기회 부여로 정당발전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헌법 제8조, 공직선거법 제7조(정당·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)
- 정당법 제35조(정기보고), 제38조(정책연구소의 설치·운영)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(위원회의 직무), 제19조(경비의 부담)

② 추진경위

- '77년부터 정당과 업무협의회 개최, '97년부터 지원대상을 후원회까지 확대
- '04년 정당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기능 강화 지원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사 업 명
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 (1132-32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홍보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1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정당발전지원	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	480	475	475	909	475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
-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을 통한 정당운영의 안정화 도모
- 소액다수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용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정치자금법」 제60조(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)

각급 선거관리위원회(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)는 정치자금의 기부·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·기탁의 방법·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·시설물·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경위

- '04. 3월 「정치자금법」 개정으로 법인·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가 금지되어 정치자금 모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 필요성 대두
- '05. 8월 「정치자금법」 개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·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의무 부여
-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따라 '06년부터 사업비 반영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정당보조금 (1132-32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 선거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2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정당발전지원	정당보조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			○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정당보조금	84,268	89,169	89,169	43,406	43,406	△45,763	△51.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정당의 건전한 발전·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급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 내지 제27조

② 추진경위

- 1981.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법정경비 도입
- 2006. 여성추천보조금 지급
- 2010. 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내역 : 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경비

<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>

• 제25조(보조금의 계상)

- 매년 경상보조금을 계상할 의무(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도 선거별로 계상)

• 제26조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) 및 제26조의2(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)

- 국선(지역구), 지선(지역구 시·도 및 자치구·시·군의원)에서 여성 또는 장애인후보자 추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계상할 의무
- 여성 및 장애인추천보조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

• 제27조(보조금의 배분)

-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

- 사업시행방법 : 보조
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(2018년)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더불어민주당	34.2%	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 내지 제27조
자유한국당	30.9%	
바른미래당	18.6%	
민주평화당	5.7%	
국민의당	3.5%	
바른정당	0.9%	
정의당	6.0%	
민중당	0.2%	
대한애국당	0.1%	

사 업 명
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(1133-33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연수원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0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	2,879	3,828	3,828	9,175	3,623	△205	△5.4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올바른 선거·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·정당관계자 교육
- 미래유권자 교육기회 제공
- 유권자 및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 대상 선거제도 등 주권의식 함양 교육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(선거제도) 및 제15조의2(선거연수원)

② 추진경위

- '00년 정치교육과 신설
- '06년 선거·정당관계자, 유권자,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
- '13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
- '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 미래유권자연수 확대·강화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선거연수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교육및연구기반조성 (1133-33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연수원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1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교육및연구기반조성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교육및연구기반조성	901	1,239	1,239	2,962	1,221	△18	△1.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국내외 선거·정치제도 연구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
-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교육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
- 관리자 리더십 향상,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(인재개발)
- 「공무원인재개발법」 제8조(인재개발계획의 작성), 제9조(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), 제10조(공무원의자기개발 등)
-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제4조(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
-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15조의2(선거연수원) 및 제19조(경비의 부담)
-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선거연수원)
-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」 제13조(선거연수원)
- 「선거연수원운영규칙」 제7조(사이버교육·연수), 11조(교수요원의 임무 등)
- 「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」 (연수원훈령)
- 「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」 (중선관훈령)

② 추진경위

-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」 개정('12.12.10.)으로 제도연구부 신설
 - 선거제도·정책 등 연구개발 기능 강화
 - 제도개선 입법화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
 -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·개선,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·관리
- '13. 10월 스마트교육 시범시스템 구축
- '14. 8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
- '15. 8월 홈페이지·사이버교육센터 통합 개편, 9월 대국민 공모전 홈페이지 구축
- '16. 8월 온라인교육 포털 구축
- '17. 4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동영상콘텐츠(3종) 개발
- '17. 10월 선거연수원 수원 이전에 따른 전산실 구축 및 전산장비 이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선거연수원

사 업 명
공명선거기반조성 (1133-33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홍보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2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공명선거기반조성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공명선거기반조성	1,137	3,055	3,055	6,087	3,055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상시홍보 활동
- 미래유권자 및 새내기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
- 상시제한 홍보 등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14조(선거제도)
- 「공직선거법」 제7조(정당·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) 제2항에 따른 정책선거홍보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제5항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홍보

② 추진경위

- ('97. 공직선거법 개정) 기부행위 제한 홍보 의무화
- ('02. 1. 1자 직제개편) 신설된 시·도 홍보과 및 구·시·군 홍보계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 지원 필요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위법행위예방활동 (1133-33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 조사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3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위법행위예방활동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위법행위예방활동	9,215	10,359	10,359	14,227	11,859	1,500	14.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파악, 예방·안내활동 및 철저한 조사로 공명선거 실현
- 기부행위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
-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위법행위 조사로 정치자금회계 투명성 제고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조항

- 공직선거법 제10조의2(공정선거지원단)
- 공직선거법 제10조의3(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)
-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7조(기부행위관련)
-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(선거범죄의 조사등)
-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(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)
- 정치자금법 제28조(보조금의 용도제한 등)
- 정치자금법 제29조(보조금의 감액)
- 정치자금법 제52조(정치자금범죄 조사 등)
- 정치자금법 제54조(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

② 추진경위

- 2000. 2. 16.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의 규정 신설(선거범죄 조사권 신설)
- 2001. 각 정당의 중앙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조사
- 2002. 3. 7. 정당 및 정당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업체 등까지 조사 확대
- 2004. 3. 12.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, 최고 5천만원
- 2004. 3. 12.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 관련 범죄까지 조사 확대
- 2005. 5. 1. 산림조합장 선거 위탁관리
- 2005. 7. 1. 농·축·수협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 함에 따라 감시·단속 대상 확대
- 2006. 1월부터 국립대학의 장 선거 위탁관리로 감시·단속 대상 확대
- 2006. 3월부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포상금액이 5억원으로 확대
- 2006. 5. 24.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시·단속대상 확대
- 2006. 5. 31.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시조사체제 도입
- 2007. 1. 1. 교육감선거 직선제에 따른 감시·단속 관리영역 확대
- 2008. 2. 29. 교육의원선거 직선제 실시에 따른 감시·단속관리영역 확대
- 2008. 2. 29.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상시운영체제 전환
- 2008. 2. 29.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상시운영
- 2010. 4. 15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예방 및 조사활동 대상 확대
- 2014. 1. 1. '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' 설치('12년 대선 관련, 국회 지적)
- 2016. 1. 정치자금조사 사업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 통합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(ODA) (1133-33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기획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		일반·지방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4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(ODA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○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(ODA)	7,982	8,318	8,318	6,654	1,501	△6,817	△82.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세계 각국의 '민주주의 동반성장'을 위한 ODA사업 추진으로 '지속가능한 굿 거버넌스' 구축
-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기법 전수
-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한국의 국격 제고 등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
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(국가등의 책무)
-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

② 추진경위

《공직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》

- 2014년 :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관단 42개국 11명
- 2016년 :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참관단 34개국 70명 참관
- 2017년 : 제19대 대통령선거 참관단 30개국, 5개 국제기구 등 68명 참관
- 2018년 :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관단 23개국, 3개 국제기구 등 55명 참관

《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지원》

- 2015년 :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국제선거참관단 최초 운영 (키르기스 공화국 총선 대상 28개국 55명)
- 2016년 : 국제선거참관단 운영 확대 (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선 대상 19개국 46명, 초청참관 11개선거 66명)
- 2017년 : 대규모 국제선거참관단 2회 운영(에콰도르 대선 등 2회 선거, 26개국, 46명)
- 2018년 : 국제선거참관단 운영(엘살바도르 총선·지선 동시선거 11개국 19명)

《초청 연수 등》

- 2006년 : 세계 각국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OICA와 공동연수 실시(1개 과정 14개국 19명)
- 2007년 : 이라크선거관리위원회위원(9명)을 대상으로 UNDP로부터 위탁연수 형태 등 (2개과정 15개국 40명)
- 2008년 :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등(2개 과정 13개국 25명)
- 2009년 : 필리핀 연수 등(4개과정 11개국 48명)
- 2010년 : 연수수요 증가와 정치권의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확대 요구 등으로 선거 법제개선 지원 연수 프로그램 도입(세미나 1회) 및 연수 확대(4개과정 12개국 61명)
- 2011년~2014년 : 22개 과정 230여명 초청연수 및 선거법제 개선 세미나 실시

- 2016년 : A-WEB 선거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총 10회, 175명 대상 실시
- 2018년 : 선거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총 7회 51개국 137명 대상 실시, 선거ICT 특화연수 총 8회 33개국 125명 대상 실시

《국별 프로젝트》

- 2013년 10월 :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
- 2015년~현재 : 세계선거기관협의회 ODA사업 수행
- 2015년~2016년 : 키르기스공화국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수행
 - ※ 현지연수 최초실시 : 총 4차(1회당 1박 2일), 121명 선거위원회 직원 및 투표소 광학판독개표기 운영실무자 대상('16. 7월~8월)
- 2016년~2017년 : 에콰도르 개표결과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 수행
 - ※ [참고. 에콰도르 개표결과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] 참조
- 2017년 : 대상사업 3개국 확대(총 5개국 : DR콩고, 엘살바도르공화국, 피지, 에콰도르, 우즈베키스탄)
- 2018년 : 국별협력사업 5개국 지원(엘살바도르공화국, 피지, 파푸아뉴기니, 기니, 사모아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(일부 국별프로젝트-파푸아뉴기니, 사모아-다년도 실시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세계선거기관협의회(A-WEB;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)
- 사업 수혜자 : 후발 민주주의 신생국가(선거위원회 또는 선거관계자)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세계선거기관협의회(A-WEB)	100	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
사 업 명
정치관계법규관리및선진화 (1135-31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 법제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10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선거관리지원	정치관계법규관리및선진화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정치관계법규관리 및선진화	496	476	476	829	476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새로운 선거환경에 부응하는 정치관계법제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국가·선거·행정소송, 인사소청 및 행정심판 수행
- 선거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각종 질의의 신속·정확한 답변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

-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(One-Stop) 의정활동 안내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의정(정당)활동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,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
- 공직선거법 제219조, 제222조, 제223조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,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

② 추진경위

-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수시 제출
- 각종 행정심판, 선거소송 등 수행
- '06년 10월 국회의원 등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등을 위해 의정지원과 설치
- '09년 7월부터 법규안내 T/F팀, '10년 1월부터 법규안내센터로 개편
- '13년 법규안내센터와 법규해석과를 해석과로 통합·운영
- '18년 선거안내센터 설치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사 업 명
인터넷심의기반조성 (1135-31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13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선거관리지원	인터넷심의기반조성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인터넷심의기반조성	89	84	84	430	84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
-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

- 불공정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
- 피해구제 및 심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한 공정선거보도 분위기 조성
-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8조(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의무)
- 공직선거법 제8조의5(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)
- 공직선거법 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)
-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② 추진경위

- 2004. 3. 12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시 제8조의5 및 6 제정
- 2004. 3.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

사 업 명
선거방송토론 (1135-31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14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선거관리지원	선거방송토론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방송토론	417	406	406	583	406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·진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
- 토론제도 연구 및 민주시민 토론문화 기반 조성
-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정당의 정견·정책 홍보기회 제공 및 정당간의 정책 비교·평가 계기 마련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8조의7(선거방송토론위원회), 제82조의2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, 제82조의3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)
- 정당법 제39조(정책토론회)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공직선거법의 준용)
- 「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- 「선거방송토론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」
- 「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
- 「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」

② 추진경위

- '04.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
- '05. 8월 정당법 개정으로 중앙토론위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
- 선거방송토론 주관 기관으로서 토론제도 연구
- 민주시민 토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등학생·대학생토론대회 개최 및 스피치 기법·대화예절 확산 등 올바른 토론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
 - ※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단체 등과 협력 강화('13년 10월 오산시와 MOU 체결 등)
- 토론대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기존 고등학생·대학생토론대회를 열린 토론대회로 통합하여 개최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각급 토론위원회

사 업 명
선거여론조사심의 (1135-315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15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선거관리지원	선거여론조사심의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여론조사심의	233	272	272	1,141	272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① 상시 모니터팀 운영을 통한 깨끗한 선거여론조사 환경 조성

- 여론조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여론조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 및 통계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모니터링 요원을 중앙 및 시·도심의위원회에 배치

- 제20대 국선에서는 72.9%, 제19대 대선에서는 66.7%를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·조치하였으나,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전임직원만으로는 상시 모니터링이 불가하므로 선거여론조사 전문 분석요원 채용
- ② 공직선거법 개정(2017.2.8.)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제도 기반 확립
 -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, 성실 응답자 인센티브 할인 제도,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·운영
 -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 및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 및 늘어나는 신고·신청·등록 등 법정 사무의 처리로 홈페이지 다운 등에 대한 관리 능력 제고
- ③ 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심의 역량 및 기능 강화
 -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업체 설명회 및 실무자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, 여론조사업계 및 학계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
 - 정당, 언론사, 여론조사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사권 신설에 따라 불법선거여론조사 발견 시 신속하면서 정확한 조사·조치 실행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의8(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)
-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의9(여론조사 기관·단체의 등록 등)
- 「공직선거법」 제96조(허위논평·보도 등 금지)
- 「공직선거법」 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)
- 「공직선거법」 제108조의2(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
- 「공직선거법」 제252조(방송·신문 등 부정이용죄) 제1항·제2항
- 「공직선거법」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제1항·제3항·제5항
- 「공직선거법」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) 제1항·제3항·제6항·제7항·제8항·제10항·제11항
- 「공직선거법」 제272조의2(선거범죄의 조사 등)

② 추진경위

- 2014. 3.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출범
- 2015. 12. 선거여론조사의 신고 및 등록이 상시화 되었으며, 선거여론조사의 적용 범위가 '정당 지지도·당선인 예상'에서 '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'로 업무 범위 확대
- 2017. 2.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,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, 응답자 인센티브

할인,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·과태료 부과권 등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 대폭 추가(2개팀 ➡ 4개팀)

□ 주요내용 등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각급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

사 업 명
인건비 (7101-15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01	15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인건비	인건비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인건비	188,616	208,508	208,508	223,104	210,583	2,075	1.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소속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

2) 사업내용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사 업 명
기본경비 (7111-250~26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기획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11	250~261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본경비	기본경비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안	확정(B)	(B-A)	비율
기본경비	13,958	14,156	14,156	14,604	14,425	269	1.9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의 집행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

2) 사업내용

-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: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내역
 -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 추진
 - 각종 공공요금의 지급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사 업 명
선거관리역량강화 (7132-34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기획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선거관리역량강화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관리역량강화	810	967	967	1,065	900	△67	△6.9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연구기능 내실화를 통한 업무혁신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
- 변화와 혁신 마인드 함양 및 조직관리 리더십 강화
-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(권역분임 운영, 전문성 강화 특화사업 및 변화와 혁신교육) 자체 시행계획
- (사무능률 제고)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등
- (직원상시학습)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

② 추진경위

- '83년 연구분임 운영 시작 이래, '04년까지 중앙 계획 하에 운영하다가 '05년부터 시·도에 운영권한을 위임하여 자율 운영중(50개 분임)
- '13년부터 '제안관리 시스템' 운영을 통해 제안사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제안 활성화를 유도
- '09년도부터 상시학습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(7132-34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인사과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3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	396	405	405	405	405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5급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등 실시로 승진임용의 공정성 확보 및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
-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각종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로 적기 인력 충원
- 시·도 및 구·시·군 법규운용담당자 실무연수(OJT) 실시로 법규운용 전문성 제고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『국가공무원법』 제4장(임용과 시험), 제6장(능력)
- 『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』 제2장(임용), 제3장(시험)

② 추진경위

- '09년부터 5급 심사 승진임용제도가 도입되어 초급관리자로서의 사전 자격검증을 위해 매년 6급 대상 능력검정 시험실시
- '13년부터 경쟁력 있는 관리자 선발을 위해 역량평가 제도 도입
- '16년부터 실무자로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위원회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제한경쟁심사승진 제도 도입
- 결원 대체 임기제공무원 및 인터넷선거보도, 사이버선거범죄대응 등의 전문분야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 실시
- '11년부터 법규운용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·도위원회 법규운용 담당자 대상 법규운용능력 함양교육 및 경시대회 실시
- '15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7·9급 공채시험 문제은행 보완비용 부담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(7132-34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정보자료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4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	1,678	2,008	2,008	3,686	2,417	409	20.4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기록물의 체계적·안정적 수집·관리·보존 및 활용(DB구축 및 사료관리)
- 도서자료의 효과적인 수집·정리·보관 및 제공
- 선거·정당자료의 수집, 사서편찬, 전시회 개최 등 선거의 역사 기록·보존·전파
-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 제고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- 「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」
- 「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」
- 「선거·정당관련 기록물 수집·보존에 관한 규정」
- 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운영 규정」
- 「선거사·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」

② 추진경위

- 기록물보존서고(수장고 포함) 및 선거전시관 설치
 - '95. 과천청사 기록물보존서고 설치(177m²)
 - '10. 관악청사 기록물보존서고 설치(237m²)
 - '15. 수원 선거연수원 신청사내 별관동 2,259m² 확보(전.국립농업과학원, 1968년)
 - '16. 「2020 위원회 미래비전」 과제 수립(선거전시관 건립)
 - '17. 「2017년 주요업무계획」 수립(선거박물관 건립기반 조성)
 - '17. 「사이버선거역사관」 고도화
 - '17. 2017-2021 중기사업계획 반영(선거전시관 등 설치)
 - '07. ~ '17. 국가기록원 주관 '2007 기록엑스포' 참가, '2010 국제 기록문화 전시회' 참가, 'AAEA총회 선거사료 특별전시' 개최, '위원회 창설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선거사료 전시' 개최, '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기록전시회' 개최, '사전투표 및 대한민국 선거전' 개최, '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기록사진전' 개최, '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념 특별전' 개최, '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특별전' 개최 등 다수
- 기록관리시스템 및 선거·정당관련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
 - '05.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
 - '10. 기록물보존서고(관악청사) 설치 및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
 - '12.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개편
 - '13. 선거·정당관련 주요기록물 DB구축
 - '14.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 및 주요기록물 DB구축
 - '15.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자료 및 주요기록물 DB구축
 - '16.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
 - '17. 제19대 대통령선거 자료 및 주요기록물 DB구축

- 사서편찬

- '09. 대한민국선거사(4~6집), 정당사(4~5집) 발간
- '10.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 편찬 계획 수립
- '13.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 발간
- '15. 대한민국선거사(7집), 정당사(6집) 편찬 계획 수립
- '16. 대한민국선거사(7집), 정당사(6집) 발간
- '16. 대한민국선거 70년사 편찬 계획 수립
- '17. 「대한민국선거 70가지 이야기」 원고 집필 및 편찬실무단 운영
- '18. 대한민국선거 70년사 발간

- 자료실 운영

- '12. 도서관리시스템(KOLAS III) 구축
- '13. 업체 제공 전자책도서관 구축
- '14. 정기간행물 및 전자학술DB(Web DB) 구독 및 서비스 개시
- '15. 선거정보도서관 고도화
- '16. 오디오북 구입 및 운영 (모바일서비스 실시)
- '17. 1월 정기간행물 구독 및 서비스
- '17. 4월 전자학술DB(Web DB) 구독 및 서비스
- '18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증축 기본계획 반영

- 선거박물관 건립

- '10. 선거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실시
- '12. 선거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
- '16. 대한민국선거박물관(가칭) 건립방안 검토
- '17. 대한민국선거박물관(가칭) 건립 추진 로드맵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국제교류협력 (7132-345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5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국제교류협력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국제교류협력	539	531	531	2,626	531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외국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(서울국제선거포럼)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, 기관 방문 등을 통한 외국 선거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·협력 증진
- 외국 선거참관을 통하여 각국 선거제도의 비교·연구 및 외국선거기관과의 교류·협력을 증진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(기획국) 제2항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7조 제5항

② 추진경위

- '07. 조직행정과 행정계의 업무 중 일부로 국제협력업무 포함
- '08. 1월 국제협력팀 신설
- '09. 1월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조직 확대 개편
- '13. 1월 국제선거기획부로 확대 개편
- '14. 1월 국제과로 조직 재편
- '15. 1월 국제협력과로 명칭 변경
- '17. 1월 행정국제과로 명칭 변경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(7132-347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감사관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7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	
감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	177	171	171	377	171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건강하고 청렴한 기관 정립
-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
- 공직자윤리법 제9조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② 추진경위

-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각급위원회 감사 및 직무감찰 실시
-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4급 이상 공직자 재산·병역신고 심사
- 각종 비위 행위의 예방 및 조사활동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차량및물품관리 (7132-349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총무과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9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차량및물품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	
차량및물품관리	1,560	1,441	1,441	1,646	1,441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노후한 행정장비(차량)의 적기교체로 선거지원 업무 능률 향상
-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·난방기, 복사기 등 보급 및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(차량의 교체)
-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(물품의 정수관리)
-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
-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

② 추진경위 :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전산운영경비(정보화) (7132-35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정보자료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전산운영경비(정보화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전산운영경비(정보화)	7,149	7,914	7,914	13,140	9,238	1,324	16.7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·관리 및 최신화로 원활한 행정업무환경 조성
- 선거행정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보호기반 강화로 대국민 신뢰성 제고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(국가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)
- 전자정부법 제3조(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)
-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(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등)

② 추진경위

- '05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(선거정보통신시스템) 지정
- '07년 정보화 중장기 발전 및 ITA 도입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
- '09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통합망 이용기관 국가정보통신망 전환 수용
- '12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(재외선거관리시스템) 지정
- '12년 위원회 자체통신망(선거정보통신망) 구축 및 서비스 이용 계약(5년)
- '13년 재해복구시스템(통합명부시스템) 구축을 위한 ISP 수립
- '16년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이용 계약(3년)
- '17년 위원회 자체통신망(선거정보통신망) 구축 및 서비스 이용 계약(5년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위원회운영 (7132-35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기획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1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위원회운영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	
위원회운영	1,638	1,499	1,499	1,544	1,499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각급(중앙, 시·도, 구·시·군)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운영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2조, 제4조, 제12조
- 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」 제4조, 제5조

② 추진경위 -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선거연수원운영 (7132-35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연수원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2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선거연수원운영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연수원운영	1,376	2,135	2,135	2,361	1,803	△332	△15.6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노후화된 선거연수원 청사의 안정적 유지·관리
-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자재 등 물품 구입·교체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정부청사 관리규정 제3조(청사의 수급 및 관리)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(선거연수원)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(선거연수원)

② 추진경위

- 2013. 5. 23. 선거연수원 신청사 유상관리전환 계약체결(시설과)
- 2017년 하반기 건축물일부(본관동, 생활동)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연수원 청사 이전
- 2017년~2018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집기 등 설비
- 2019년 민주시민교육 확대 및 내·외부 기관·단체의 연수원 시설 대여요구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선거연수원

사 업 명
청사관리 (7132-35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기획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4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청사관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청사관리	22,184	17,697	17,697	23,796	19,890	2,193	12.4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각급위원회 청사의 유지·관리 및 개보수 경비(대수선 경비 포함) 편성
- 유상임차 청사의 안정적인 임차료 및 관리비 확보
- 위원회 업무 보조를 위한 사회복지무원 관리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
-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·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병역법 제26조 및 제27조

② 추진경위

-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
-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·관리
- 선거 상시화로 위법행위 예방·단속 및 부대사무 급증에 따른 보조인력 확보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투개표선진화(정보화) (7136-50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 선거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6	50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선거행정정보화	투개표선진화(정보화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투개표선진화(정보화)	362	1,971	1,971	1,154	628	△1,343	△68.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투·개표 지원
- 선진화된 투·개표장비의 체계적 유지·관리
- 공직선거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직선거법」 제278조(전산조직에 의한 투표·개표)
- 「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」 제22조(전산조직에 의한 투·개표)
- 「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69조(전자투표 및 개표)
- 「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 규칙」 제17조(전자투표·개표 등)
- 「주민투표 관리규칙」 제10조(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의 준용)
- 「주민소환 관리규칙」 제33조(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)
- 「주택법」 제43조의5 (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)
- 「주택법시행령」 제56조의2 (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)

② 추진경위

- '04. 7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
- '05. 11월 ~ '07. 8월 터치스크린 투표 시범시스템 개발
- '10년 ~ '13년 터치스크린투표장비 성능향상(투표기 900대)
- '13년 온라인투표 서비스 제공(KT와 MOU 체결)
- '14년 터치스크린투표장비 성능향상(명부단말기 260대)
- '15년 터치스크린투표장비 성능향상(명부단말기 330대)
- 2006. 10. ~ 현재 : 당내경선 등 민간·위탁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터치스크린투표장비 활용
- 2018년 하반기 자체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선거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 (7136-52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정보자료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6	523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선거행정정보화	선거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정보시스템구축 (정보화)	5,497	5,493	5,493	5,869	2,843	△2,650	△48.2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선거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거 정보화 추진
- 위원회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44조의2(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)
- 공직선거법 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
- 공직선거법 제14장의2(재외선거에 관한 특례)
- 공직선거법 제274조(선거에 관한 신고 등)
- 전자정부법 제1조(목적)
-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(공공정보화의 추진)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(개인정보 영향평가),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(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)

② 추진경위

- 2007년 :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(ISP) 수립
- 2008년 : 위원회 정보화 통합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
- 2009년 : 재외선거인 선거권부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2. 12.)
- 2009년 : 재외선거 및 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(12. 24.)
- 2012년 : 통합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2. 29.)
- 2014년 : 전국단위 최초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(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)
- 2015년 :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·신청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8. 13.)
- 2015년 : 영구명부제 및 사전투표 전용통신망 구축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12. 24.)
- 2016년 : 제도개선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
- 2017년 :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의 완벽한 관리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(계속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사 업 명
예비금 (7137-43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기획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7	43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예비금	예비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예비금	458	460	460	460	460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·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(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비)

② 추진경위

- 선거관리위원회·국회·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경비
- 평소 예산지원이 부족한 중앙, 17개 시·도, 251개 구·시·군위원회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 경비 지원 등에 활용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